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0.

발 의 자 : 최수진 · 구자근 · 김은혜
박충권 · 김예지 · 성일종
신성범 · 김소희 · 박수민
강선영 · 김태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·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(안별표 제223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04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

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23	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1조의2	장기 사용허가등	2033. 12. 31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